

() 사업 [] 면허신청서
[] 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7일
신청인 · 신고인	상호(명칭)		
	성명(대표자)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
	(전화번호:)		
신청·신고 사항	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		
	영업구역		
	선박명세		
	사업기간		
영업시간(운항 횟수)			

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([]면허신청, []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·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관할관청의 장

귀하

신청인·신고인 제출서류	1. 정관(법인만 해당합니다) 1부 2.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(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선박원부로 선박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) 3. 인명구조용 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 시설명세서 각 1부 4.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(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) 각 1부 5. 영업구역 도면 1부 6.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용 등 허가서 사본 1부	수수료 없 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만 해당합니다) 2. 선박검사증서(「선박안전법」을 적용받는 선박만 해당합니다) 3. 선박원부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,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선박의 소유권이 나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선박원부의 사본을 제출하거나 선박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·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영업구역에 중간 기착지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 기착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(신고)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